

判例教室

外国事件

本件 考案과 同一構成을 갖춘 物件이 本件 出願前 國內에서 公然 實施 되었 다고 한 事例

(東京高試 60.9.25判決；昭和 58年(行ケ) 第181號)

1. 事件概要

原告는 色鉛筆에 關係되는 登錄實用新案의 権利者로서被告가 請求한 特許廳의 無効審判에 있어서 本件登錄實用新案權의 登錄을 無効로 한다는 뜻의 審決을 받았으므로 이 審決의 取消를 求해서 出訴하고 審決은公然實施의 判斷을 잘못하였다라는 것이라는 등이라고主張하였다.

2. 判決 要旨

判決은 下記 理由에 따라原告의 請求를棄却했다.
즉, 特許廳의 無効審判事件에 있어서 證人尋問調書 및 雜誌「貿易通信」에掲載되었던 廣告文等의 證據에 따르면 N社는原告(本件 考案의 考案者)가 勤務하는 T社製品의 販賣會社로 있었고 本件出願前이었던昭和 42年 10月경 前記雑誌에 色鉛筆 마니칼라의 廣告로서掲載하고 그때 이것을 C社에 販賣하고 C社는同年年末에 從業員 S의 販賣擴張에 의해 이것을去來先 A백화점에 販賣한 것이 認定되었다. 다만 前記特許廳의 無効審判事件에 있어서 證人 T 및原告本人의 寻問調書에는 前記雑誌에 廣告한 것은 業界의反響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實際로 販賣되는 商品으로서는 아니라는 뜻의 供述記載가 있지만 審決에 진술한 것 같이 廣告에掲載한 以上 特別한 事情이 없는한 注

文이 있으면 바로 納品하는 狀態에 있는 것이 普通이므로 上記 特別한 事情을 認定함에充分한 證據가 없으므로 이것을 信用할 수 없다. 또, 廣告는 前記 마니칼라는 條理上 考案者에 不利益을 주는것을 回避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者가 諒知함에 불과하다는 뜻을 主張하지만 前記 C社, 그 從業員 S, A백화점 및 그 從業員이 本件 考案의 考案者로서 있는原告에 대해 條理上 마니칼라의 構造에 대해 秘密을 지킬義務를 가지게 할 關係에 있다는 것을 認定함에充分한 證據는 없다. 다음에原告가 主張하는 바 鉛筆心을 끼워넣는 구멍과 凹構의 사이 切取部에 의한 連通構成은 本件 考案의 1实施例에 머물고 本件 考案의 連通構成은 이것에 限定시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認定되었다.

그렇다면 前記 마니칼라는 本件 考案의 構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認定되므로 本件 考案과 同一構成을 갖춘 마니칼라가 本件出願前에 國내에 있어서公然實施된 것이 된다.

3. 論評

이 判決은 證人 T 및原告本人의 供述을 물리치고雑誌에 廣告를掲載한 以上 特別한 事情이 없는한 注文이 있으면 바로 納品하는 狀態로 있었지만 本件에는 上記 特別한 事情을 認定함에充分한 證據가 없다는 뜻을 判示한 點에 特色이 있다고 생각된다. (※)